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 관할 시·군·구에 신고(지자체 홈페이지 민원 등 활용)
- **생활불편신고앱** 활용 신고



1.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 설치
2. **생활불편신고앱** 실행
3. **촬영** 버튼을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후 저장
4. **신고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5.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파일로 불러오기
 ※ 반드시, 주차차량의 전면(주차표지 확인) 및 후면 사진 촬영 요망
6. 신고위치 및 신고내용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나의 민원**에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 장애인 주차표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표지는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발급됩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인 경우 바로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하고,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의한 별도의 판정을 받아 **보행상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Q&A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정도판정결과 추가심사결정안내문을 통하여 보행상장애 여부가 확인 된다면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 아래 표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표지 : 주차가능 표지 중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본인운전용>



<보호자운전용>

- 사용 불가 표지 : **주차불가** 표지, 구형주차표지 등



<구형표지>



<주차불가표지>

Q&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차(5분 이내)와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정차하는 경우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할 수 없나요?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장애인 없이 보호자 또는 제3자 등이 이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주차표지 회수처분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등

과태료 10만원



보행상장애인 미탑승

-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표지 부당사용

- 표지의 대여, 양도, 위변조 등

과태료 200만원 +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두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2면 이상의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Q&A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구형표지를 신형표지로 바꾸지 않았거나, 자동차에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구형표지 부착 또는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행위와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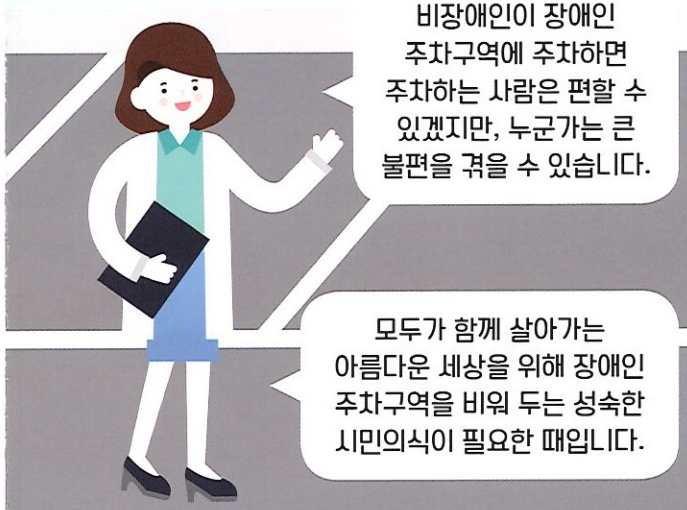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 설치비율 : 주차댓수의 2~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단 주차댓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설치규격 : 폭 3.3m 길이 5m 이상 (출입구 등과 가장 가까운 장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우리의 **작은 배려**이기도 하지만, 최근 **위반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 ('14)88천 건 → ('15)153천 건 → ('16)263천 건 → ('17)330천 건 → ('18)420천 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당신의 작은 배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